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기기)를 꼭 설치합니다.

◇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I 절수설비, 절수기기란? (※ 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5)

□ (절수설비)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 (변기) 공급수압(동압)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

종 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		
대변기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	(3등급)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	(3등급) 6리터 이하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1등급) 0.6리터 이하	(2등급) 1리터 이하	(3등급) 2리터 이하
* 사용수량: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수세핸들을 1초간 작동시켰을 때 나오는 물의 양으로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			
※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는 수세핸들을 1초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			
** 평균사용수량: $\frac{(\text{소변용 사용수량}) \times 2 + (\text{대변용 사용수량})}{3}$			

○ (수도꼭지) 공급수압(동압) 98kPa에서의 토수유량을 기준으로 구분

종류	절수설비 기준	
일반 수도꼭지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리터 이하인 것	
	(1등급) 5리터 이하	(2등급) 6리터 이하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	
	(1등급) 5리터 이하	
샤워용 수도꼭지	샤워헤드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우수등급) 7.5리터 이하	
* 최대토수유량: 변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L/min)을 말함.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토수유량으로 봄		

□ (절수기기)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II

설치 의무대상 시설

(※ 근거 : 수도법 제15조)

- (신축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

*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수도법」 제15조제1항, '01.3.28.)

-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 (숙박업 및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기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예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 공공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학교, 역사, 터미널, 휴게소, 국·공립공원)의 부속 화장실 등

- (근거 규정)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III

설치 확인 방법 (인증서/시험성적서 확인)

- (환경표지 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이상의 절수성능이 있음을 인증받은 증명서

< 환경표지 인증제품 조회 방법 >

- ‘환경표지’ 또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환경표지) 홈페이지(el.keiti.re.kr)→인증기준→인증기준 목록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greenproduct.go.kr)→녹색제품 정보→녹색제품 상세검색

- (시험성적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이상의 절수성능이 있음을 시험·검사받은 성적서

< 환경표지 인증서(양식) >

제 호
환경표지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공장·사업장 소재지: 5. 대표자 성명: 6. 대상 제품: 7. 상표명 / 용도·제공서비스: 8. 인증 기간: 9. 인증 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므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인증 이력]
년 월 일 인증수탁기관의 장 직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시험성적서(예시) >

물사용량 확인결과서		
발행번호	접수번호	
확인 완료일	접수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 제품	제조·수입 [] 제조 []	품목
	제품명	모델명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확인 결과		
■ 검사방법:		
물사용량		
절수등급		
작성자:		기술책임자:
위와 같이 물사용량 및 절수등급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		

※ 위 양식은 예시이므로 시험·검사기관별 사용 양식이 상이할 수 있음

IV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

- ◇ 「수도법」 개정·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 (적용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의 업종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절수설비

□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의 조건에서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기 3개 등급, 수도꼭지 2개 등급으로 구분

종류	(측정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대변기	1회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소변기	1회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수도꼭지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

* 단, 샤워용 수도꼭지의 경우 7.5리터 이하를 “우수등급”의 단일등급 적용

□ (표시정보) 절수등급 및 물 사용량, 업체명, 모델명, 검사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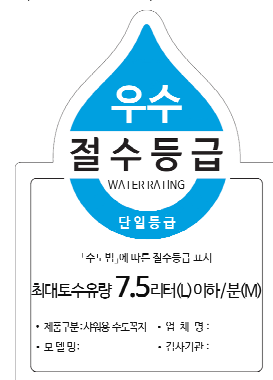
(예시1) 1등급(변기)



(예시2) 1등급(수도꼭지)



(예시3) 우수등급(샤워용수도꼭지)



□ (시험·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 (변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 (수도꼭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 시험 · 검사기관 조회 방법 >

- ‘한국인정기구 KOLAS’ 홈페이지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절수설비의 시험·검사기관 조회 가능
- 한국인정기구 KOLAS 홈페이지(knab.go.kr)→공인기관검색→시험기관검색→규격명
- * ‘규격명’에 “위생도기”(또는 “변기”), “수도꼭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

□ (시험·검사방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3항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 (변기) EL223(대변기), EL228(소변기), EM501(대변기 사용수량 및 세척성능 시험 방법) 등

○ (수도꼭지) EL221(수도꼭지), EL222(샤워헤드) 등

□ (근거 규정)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V

위반시 조치사항

①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근거 :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과태료 처분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수도법」 제87조제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절수설비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근거 : 「수도법」 제15조제3항)

- (이행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 (과태료)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수도법」 제87조제4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근거 : 「수도법」 제15조제4항)

과태료 처분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수도법」 제87조제2항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수도법」 제8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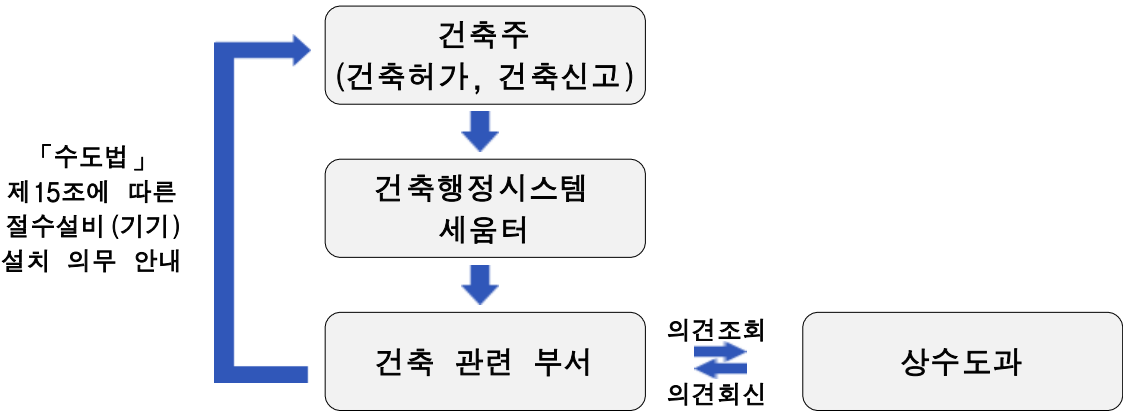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VI 협조 요청사항

□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 등 건축 행위시 반드시 절수설비(기기)의 설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전 안내 및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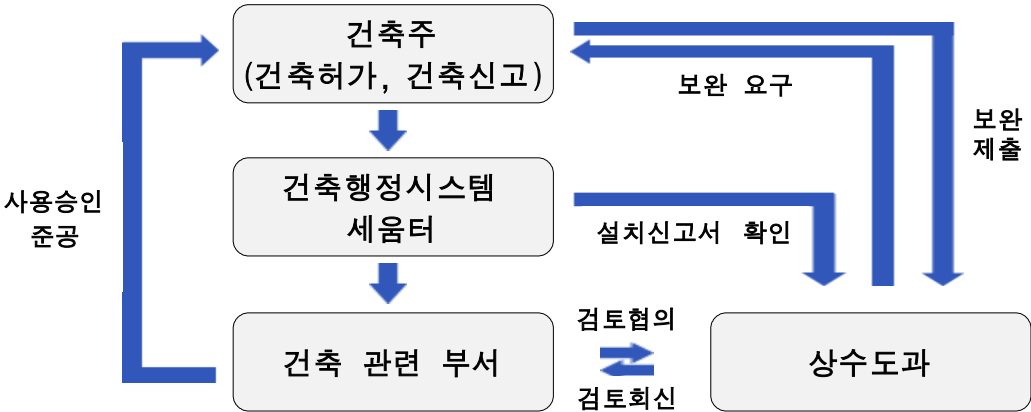
① (허가/신고 단계)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서 검토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상수도과 등 관계부서 의견조회 후 허가/신고 수리할 것

※ (건축 관련 부서) 건축허가, 신고 수리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안내 및 반영 검토
(상수도과 등 급수 부서) 설치 의무대상 관리, 건축부서의 의견조회 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조건 등 반영 여부 확인하여 의견 회신



② (사용승인 단계)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 환경표지 인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것

※ (건축 관련 부서) 상수도과 등 급수 부서와 검토 협의
(상수도과 등 급수 부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검토, 보완 요구, 검토 회신



□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파악과 현장점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확인), 유선 확인 등을 통한 주기적 점검·관리 실시

□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설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참고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예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m ²)	

①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위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문수/구청장 귀하

확인자

인 (서명)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①, ②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VII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Q&A

- 공공기관은 절수성능을 가진 일반 제품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교체 및 개량할 경우 환경 표지를 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지하수 사용업소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도꼭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로 설치해야 함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시 절수 성능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음용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도꼭지를 설치하거나 수도꼭지 이전에 설치하여 물과 접촉하는 절수기기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생 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인증 획득 여부를 제품 및 제품 포장 용기에 표시된 수도용 KC 마크를 통해 식별 가능
- 공급수압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사용수량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사용수량은 공급수압 98kPa의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수량으로, 절수설비(기기)를 실제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 시 공급수압 등 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그 사용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끝.



<수도용 KC 마크 도안>